

◇특허출원료 불납과 보정명령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청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특허출원시에는 출원서에 출원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원서만 제출하는 경우에 직접 불수리하지 않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정기간(내국인 1개월, 외국인 2개월)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출원료를 납부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보정명령)한다. 이때 출원인이 상기의 보정기간내에도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특허청은 출원인이 그 출원절차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무효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출원인이 상기 지정기간을 이행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 즉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친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에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해태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의장출원의 구비서류와 출원절차

의장출원의 구비서류와 출원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심미적인 고안으로 반드시 물품이 전체

되며, 외관에 고안자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면이 필요하며 별도의 명세서의 필요치 않다.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의장등록 출원서(정·부분 각 1통)에 의장의 도면 또는 도면에 갈음하는 사진이나 실물견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출원인이 의장고안자가 아닌 때에는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출원



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법인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증명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락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비밀의장의 경우에는 비밀청구기간을 지정한 도면을 각 1통씩 구비하여야 하며, 의장의 도면은 정투상도법에 의한 육면도와 사시도 및 필요한 단면도를 도시하여야 하며, 또한 그 도면에 갈음하여 의장의 사진·모형 또는 실물견본의 제출도 가능하다.

출원절차로서는 상기의 요건을 구비한 출원서에 출원료 4만1천원

(비밀의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비밀의장청구료 8천원을 더함)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특허청에 제출할 수도 있고 변리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또한 우편에 의한 우송도 가능하며, 이 경우 출원일의 인정은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기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할 때는 특허청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이 출원일이 된다.

◇공동고안의 출원절차와 단독출원

2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고안의 출원절차와 이 경우 공동출원하기로 합의하였다가 그중 1인이 단독으로 출원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공동고안이란 2인 이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활동에 참가하여 실질적 협력하에 고안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고안이라고 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활동에 참가하여 그 완성에 기여한 자를 공동고안자라고 말한다.

실용실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고안자이다. 따라서 공동고안에 대하여 실용실안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고안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중 1인에 의한 출원인 경우에는 실용실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용실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가능하므로 각 공유자가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분을 양도받았을 때에는 양도받은 자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ST**